

본 개정 법률안은 국가기록관리 체제에 경제성 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지원을 위해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배제되어 있던 민간 기록관리기관의 개입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민간기록관리시설의 정의와 정부산하공공기관의 민간위탁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900여 정부산하공공기관의 낮은 기록관리 수준을 근거로 각 기관의 이행능력 부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정부의 직접급부 또는 R&D분야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록생산량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비해 적고 분류체계 등이 유연해 져야 하는 점에서 통일적인 기록관리체계의 일환인 온나라시스템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체질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법령의 일반사항과 전 공공기관 공통의 표준, 지침, 규정 외에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정책 개발의 부재를 논의하지 않은 채 현 상태의 문제가 개별 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설사 기록전문가가 기관에 배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고 기록생산시스템 체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록관리 실무수행에 제약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개정에서 전제로 했던 기록관 전치주의에 대해 기존 법령에서 의무조건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간 방관과 같은 관리 부재의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방향 및 방법을 고민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면 900여개 기관의 독특하고 다양한 규제환경과 분류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 바탕을 전제로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합리성이 배제된 맹목적인 산술적 경제성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기초해 2012년 발표된 전자정부 vision 2020에 맞춰 각 분야별 연방정부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국립기록청(NARA)의 역시 이에 조응하여 2014년 9월 그간 추진해온 활동과 시행착오 등을 바탕으로 자동기록관리계획(AERM plan)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이해당사자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자정부는 전략의 변화이며 그간 추진해온 정부차원의 원칙과 기록관리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균등한 정보획득과 이의 투명한 공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형성을 위해 어떤 방식의 연구와 시도에 대해서든 국가적 지원을 약속하는 계획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외에도 오픈소스그룹과 수십 년간의 기록관리솔루션 개발 경험이 축적된 민간영역의 솔루션에 대해 허용가능성을 동등하게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선택하여 도달 가능성을 추구하는 어떠한 노력에도 재정적 지원 및 기술지원을 확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스스로 기관 체질에 맞는 전자정부체계로의 합류를 독려하는 것이라 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법령개정은 기관의 자발적 모색이나 지원에 대한 언급 없이 형식을 제한하는 제도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는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오픈소스개발 그룹참여의 배제에 해당한다.

아울러 미국은 법무부와 e-Discovery 문제를 협의하고, 비전자 기록의 전자화자료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관단체장회의, 기록관리 담당자, 기관 직원과의

소통을 한축으로 여긴다. 그리고 AIIM, ARMA, EDRM(별도그룹)는 미 연방정부의 기초에 맞추어 관련연구에 힘써 각종 표준과 기술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AIIM의 경우 올 7월24일을 기점으로 AERM 추진의 기축에 해당하는 retention schedule, 자동분류 등의 개발전략교육프로그램 뿐 아니라 산업영역의 자격과정이 개발되었다. 아울러, e-mail, sns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정보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추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mail은 capstone을, sns의 경우 현 수준에서는 정부차원의 참여 부분에 대한 소통내역을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는 EDRM 네트워크의 추진을 통해 ILG(information Lifecycle Governance)수립, ECM구조로의 전환을 근저에 깔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각 기관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자부 및 미래창조부의 근래의 정책 추진 정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전자문서유통센터를 통한 정보서비스 및 대민 소통(전자문서기반), GKMC, e-Discovery 추진 등이 EA에서 ECM으로 향하는 주요 증적이라 본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서 정보의 통제 가운데 불확실한 목적과 소통의 부재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상명하달 식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등 중앙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개정안이 전제로 하는 기록관 설치 조기 이행(전문 인력의 배치), 처분일정표 및 분류체계의 개발 등 자립 환경 구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보조 방안 마련, 민·관·학 공조체제를 갖추고 각 기관의 교육, 협업, 협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유도로 명분을 갖고 소임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절차적으로 개별기관의 규제환경 분석 및 기술, retention schedule 및 taxonomy개발을 전제로 하며, 이는 우리의 초기 로드맵에서의 처분일정표 개발 및 시소러스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모범실무에 바탕을 둔 자가 학습형 시스템으로서 그 근저에 이러한 도구를 통해 정교한 알고리즘으로의 발전을 염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가 학습능력을 지닌 시스템 개발은 초읽기 수순에 있으나 그 개발만으로는 모범실무에 바탕 한 업무추진을 이룰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기록 민간위탁에서 맞춤형 기록관리환경 구축이 비경제성을 근거로 일단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및 처분일정표, taxonomy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BRM확산시의 진행 번복을 피해야 한다.

기술의 융합은 20세기 말부터 예견되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헤게모니의 이동을 요구하기 보다는 각 분야를 융합하여 서로의 단점 보완으로 보다 완벽한 형태의 추구하는 방식이며 애자일(agile)정신과 닮아 있다. 어느덧 기록관리 영역도 노동집약적 업무환경에서 차츰 기술발달 혜택을 누리면서 보다 정교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자동화된 시스템 환경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당초 설계된 기록전문가의 위치도 변화할 것이다. 본 개정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요컨대 기록관리 자립 환경 구축지원을 배제하고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관여해야 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심도 있게 학습하고 발견되는 문제를 공유하며 양보할 것과 지켜야 할 원칙을 식별하는 등 기술 융합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measure)하여야 한다.